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